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2010. 12. 1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신설(안 제10조의2)

- 자동차 등록시 사용본거지 시장·군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납세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음

- 수탁받은 시장·군수는 등록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토록 규정

4.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수탁받아 처리하도록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제1항)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며(제2항)

- 신고 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서류를 전산 송부하도록 함(제3항)

○ 동 조례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치이며,

○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의 지방에서도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 임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